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24

## 서울고등법원

### 제 35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20나201400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엄윤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정욱진
제 1 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합10893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3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5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당초의 주권교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17행(표 부분 제외, 이하 같다)까지의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표 내부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11조(준용) 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관련 법



규 및 피고의 정관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 제3면 제11행의 "피고는"부터 제13행의 "거부하고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9. 5. 2.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가 2016. 6. 23. 피고로부터 사임 내지 사직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로써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서가 1통만 제출되어 적법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권교부를 거부하였다.』

○ 제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상법 및 그 시행령과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 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상법 시행령

####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피고 정관(2014. 3. 28.자 개정)

#### 제11조의1(주식매수선택권)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2. 원고의 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행사 기간 내인 2019. 2. 25.경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보통주 450,000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권교부 요청에 대하여 2019. 5. 2. 이를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주권교부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9. 5.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보통주 450,000주에 대하여 이행거절 당시인 2019. 5. 3.을 기준으로 한 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차액 232,650,000원[= 450,000주 × (이행거절 당시 주당 가액 1,140원 - 주당 행사가격 623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가 주권교부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2019. 2.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금으로 280,3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의 보통주 45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피고의 주권교부 의무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무효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주장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3.경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서 사임하였고, 이는 상법 제542조의3 제5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인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9. 3.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sup>1)</sup>.

###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당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에게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삼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②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존 주주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은,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제542조의3 제5항과 시

1)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에 피고로 하여금 C 주식회사와 과도한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감독하지 못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고, 이는 상법 제542조의3 제5항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2호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행령 제30조 제6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와 같이,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재량에 따라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서 퇴사한지 약 2년 8개월이 경과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542조의3 제5항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및 피고의 정관 제11조의1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하였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사 등을 이유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과 피고 정관의 규정을 들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인 2년의 재임 기간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행사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과 피고의 정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최소 2년의 재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시기를 2년의 재임 기간 이내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은 앞서 본 상법 및 피고 정관의 문언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였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취소 전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임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식매수선택



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효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 즉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그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피고가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원고의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역시 실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조광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24

판사        하태현